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2012가합74460]



【전문】

【원 고】

【피 고】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3인) 【변론종결】2013. 10. 24.

【주문】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 가. 당사자 지위
 -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П.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 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 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 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 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 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 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 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 을 보장함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 가. 당사자 지위
 -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표.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참조).

- 표.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 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 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 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 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표.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 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 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 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 을 보장함

-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 가. 당사자 지위
 -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표.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 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 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 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 을 보장함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표.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 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 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 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 을 보장함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제우인베스트먼트(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10과의 인연으로 피고 2를 알게 되었다.

나.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부산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건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참조).
- 피.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상호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상호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상호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상호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상호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상호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호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 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